

청년희망재단 채용 지원금 지급 기준 (요약)

※ 아래 내용은 청년희망재단 채용 지원금 지급 기준에 대해 설명하기 위한 요약본입니다. 인재 채용 지원금 신청 시 참고 부탁드립니다.

제 1 장 총칙

1. “청년인재”(이하 “청년”이라 한다)라 함은 현장중심 실무경험과 창업 전반에 걸친 역량 축적을 희망하는 자로 이 사업에 참여 신청하여 신생 벤처기업(Start-up)과 매칭이 성공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창업 전반에 걸친 실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.
2. “신생 벤처기업(Start-up)”(이하 “스타트업”이라 한다)이라 함은 우수 역량과 도전의지를 갖춘 청년인재 구인을 희망하는 기업으로 운영기관이 발굴하며, 청년과 매칭이 성공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창업 전반에 걸친 노하우를 공유하는 기업을 말한다.

스타트업의 책임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매칭데이 참가신청 및 제반서류 제출
2. 파트너십 준수
3. 청년인재 급여 지급
4. 파트너십 유지 현황 및 성과 보고 요구 등의 성실한 대응
5. 지원금 집행현황·관리 및 정산을 위한 보고 등의 요구에 대한 성실한 대응
6. 기타 재단 및 운영기관이 요청하는 사항

제 4 장 매칭데이

제13조(청년인재 발굴)

② 매칭데이 참가 신청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, 운영기관별 세부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. 단, 지원금은 대한민국 국적인 자에 한하여 지원한다.

제15조(중복수혜 검토) ① 매칭 신청일 기준 청년이 정부 재정지원 인력지원 사업(인건비)을 수행 중이거나 수행한 이력이 있는 경우 동 사업을 중복하여 수행할 수 없다.

② 운영기관은 청년의 정부사업 수행 이력 등을 사전 확인하고, 중복수혜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.

*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인턴제, 중소기업청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등(붙임1 참조)

제20조(파트너십 체결)

① 매칭에 성공한 청년과 스타트업은 세부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를 서면으로 명시(근로계약 등)하여 상호 동의 후 날인(또는 서명)하여 원본을 각 1부씩 보관하고 관련 서류 사본을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청년의 급여는 청년과 스타트업 간 상호 협의에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재단의 지원금(청년 1인당 50만원/1개월)을 포함하여 당해 연도 최저임금법에서 정하는 급여 수준 이상 지급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④ 청년의 근무시간은 청년과 스타트업 간 상호 협의에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당해 기업 통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전일제 형태로 운영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업무의 특성상 근무시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.

⑤ 스타트업별 지원 청년은 최대 2인으로 하며, 재단의 지원금 지급이 가능한 파트너십 기간은 최대 6개월 이내로 정한다.

⑥ 파트너십 체결 이후 중복수혜 여부를 확인한 경우 운영기관은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재단에 보고하여야 하며, 스타트업은 기지급 금액 중 중복수혜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단에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.

⑦ 운영기관은 스타트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청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.

1. 매칭신청일 기준 스타트업 소속 임직원(등기임원, 실질경영인 포함)
2. 소속 임직원의 직계존비속, 형제, 자매, 배우자

제22조(지원대상 협약 변경) ①협약 내용에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, 청년과 스타트업 간 상호 협의하여 운영기관에 협약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.
② 운영기관은 변경 요청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청년과 스타트업에 통지하여야 한다.

제23조(지원대상 협약 해지) ① 사업 수행이 불성실 하거나 청년-스타트업 간 상호 동의 또는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트너십 유지가 현저하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운영기관은 협약을 해지하고 귀책 사유에 따라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② 협약 해지가 발생할 경우 운영기관은 해당사항을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.

제32조(정보제공 동의) ① 청년과 스타트업은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개인(기업)정보 제공·활용 동의서를 재단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② 재단과 운영기관은 제1항의 동의서 제출을 거부하는 청년 또는 스타트업에 대하여 지원대상 제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33조(비밀유지의무) 재단, 운영기관, 각종 위원회 위원 및 스타트업, 청년 등은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비밀 등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정보 제공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 누설할 수 없다.

제34조(서류보관) 재단, 운영기관, 스타트업, 청년은 동 사업 운영 및 수행에 관련된 서류를 사업 종료일로부터 3년간 유지·보관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35조(시행일) 동 지침은 201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**『신생 벤처기업(Start-up) - 청년인재 매칭 사업』
유사 사업 중복지원 기준**

□ 중복지원 검토 개요

- 재단 사업과 정부 사업 간 중복수혜자 발생에 따른 사업 추진목적* 희석 방지

* 정부 사업의 지원대상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벤처 기업과 청년인재 발굴 지원

< 사업별 지원 개요 >

구분		스타트업-인재매칭 (청년희망재단)	청년취업인턴제 (고용노동부)	창업인턴제 (중소기업청)	창업선도대학 (중소기업청)
지원 대상	기업	신생 벤처기업	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강소·중소·중견기업	업력 7년 이내, 상시근로자 3인 이상, 매출액 1억원 이상 등	(예비)창업자
	청년	미취업자	미취업자 (피보험경력기간 1년 미만)	대학(원) 재학생/ 졸업 5년 이내 미취업자	창업기관 신규 채용인원
지원내용		청년의 급여	청년의 급여	창업활동비 (임금, 4대보험비 사용불가)	창업아이템 사업화 비용(인건비 포함)
지원규모		월 50만원, 6개월 (최대 3백만원)	월 60만원, 3개월 (최대 1.8백만원)	월 80만원, 12개월 (최대 9.6백만원)	지원규모별 상이

□ 중복지원 기준

- (기업) 운영기관이 기업 현황 및 성장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참여 적정성 판단
- (청년) 정부 사업 수혜 이력에 따라 판단
 - 청년취업인턴제 : 지원내용 동일 ⇒ 중복지원 불가
 - 창업선도대학 : 지원내용 부분 동일(인건비 지원) ⇒ 중복지원 불가
 - 창업인턴제* : 지원내용 상이 ⇒ 중복지원 가능

* 인턴을 통한 청년의 창업준비활동 지원사업으로, 정부지원금은 인프라 구축 및 교육훈련비 등으로 활용(인건비 사용 불가)

[붙임 제3호]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

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】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 법 제3조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.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. <개정 2008.2.29., 2008.5.9., 2011.6.8., 2013.3.23., 2014.12.3.>

No	대상 업종	코드번호 세세분류
1	금융 및 보험업	K64~66
2	부동산업	L68
3	숙박 및 음식점업(호텔업, 휴양콘도 운영업,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)	I55~56
4	무도장 운영업	91291
5	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	9112
6	기타 gambling 및 베팅업	9124
7	기타 개인 서비스업(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)	96
8	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	-

【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】 제3조(적용 범위) 이 법은 창업에 관하여 적용한다. 다만, 금융 및 보험업과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1.4.4.>

*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통계청, www.kostat.go.kr) 참조